



한국은행

수신자 조사대상업체 대표이사(참조: 재무 및 회계담당부서)

제 목 2021년 상반기 중계무역거래 현황 조사 협조 요청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동향 파악 및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제수지통계(국가승인통계 제301008호)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.

3. 국제수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계무역거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조사표를 작성하여 **2021.10.11(월)**까지 이메일(bokbop@bok.or.kr) 또는 팩스(02-759-4288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동 조사표 작성 요청은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0조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10-3조, 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, 「통계법」 제26조에 근거하며, 귀사가 제공해주신 자료는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2조, 「통계법」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국제수지통계 편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—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0조(보고·검사)

-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—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10-3조(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 징구)

- ① **한국은행총재**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,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,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또는 외국환거래의 당사자나 이에 관련되는 자에 대하여 **보고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.**
 - 2. 국제수지, 국제투자대조표 및 외국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

—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2조(과태료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**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**
 - 4.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

— 기타 관련법규

「외국환거래법」 제22조(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), 「통계법」 제26조(실지조사 등), 제41조(과태료), 제33조(비밀의 보호), 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(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 등)

- 붙임 : 1. 2021년 상반기 중계무역거래 현황 조사표 1부.
2. 중계무역거래 현황 조사 개요 1부.
3. 무역거래 형태 분류에 관한 협조요청 1부. 끝.

한 국 은 행



팀원(G5)

이상아 국제수지팀장

09/13
박장현

협조자

()

시행 국제수지팀-359 (2021.09.13.)

접수 ()

우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

/ <http://www.bok.or.kr>

/ 직무권한:

전화 4331 [880] /전송 02-759-4288

/ lee.sanga@bok.or.kr

/ 공개